

2025년 인권경영 보고서

2026. 3.



2025년 인권경영 보고서

❖ 재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권존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인권경영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I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인권경영 추진전략

미션	우수인재 양성 및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		
비전	국내 최고 맞춤형 인재양성 평생교육 플랫폼 기관		
핵심 가치	고객중심	도전혁신	전문역량
경영 방침	인천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동문이 되는 시민대학 시대 선도		
인권경영 비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중심 “인권경영”		
인권경영 목표	인권침해 ZERO 기관		
중장기 로드맵	도입기(2020년)	정착기(2021~22년)	확산기(2023년~)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제도 정착	인권경영 고도화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추진 전략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경영 시스템 내실화
	실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및 공표 인권경영 대내외 공유 및 확산 인권경영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인 실시 인권경영 교육 내실화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수립 및 개선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실행체계	제도적 장치 [규정]	전담 조직	구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린신고센터 무기명 신고

I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국가인권위원회]
- 재단 인권경영규정 제5장 제28조(인권영향평가)
- 재단 202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경영지원실-7704(2025.09.30.)호]

□ 추진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에 대한 요구 필연

구분	내용
(UNGPs)	• 2011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이 원칙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이는 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②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③ 피해자 구제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다국적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포괄적인 지침
ILO Conventions	• 국제 노동 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로 ILO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실천의 선도적 역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추진체계도]		
인권경영 체계 구축 (1단계)	①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②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③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④ 기관의 영향권 내 모든 협력사 확산	
인권영향평가 실시 (2단계)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②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③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④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 ⑤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②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③ 체크리스트 교육 ④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⑤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 ⑥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3단계)	① 인권경영 (사업) 실행 ②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구제절차 제공 (4단계)	①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② 구제절차 수립 ③ 구제절차 시행 ④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III 202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및 실적

□ 202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미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중심 “인권경영”		
비전	인권침해 ZERO 기관		
확산기	1 이행결과 점검 및 환류 → 인권영향평가 및 위원회 개최	2 인권침해 구제절차 고도화 /모니터링 → 인권 구제요청 검토 및 구제 조치 실시	
	3 인권경영 개선과제 지속발굴 및 이행 → 전년도 개선과제 조치 및 이행	4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 → 인권 존중 캠페인 실시 및 확산 노력	
개선과제	3-1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 인권경영 성과 및 관리를 포함한 환류체계 구축 •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 실시	3-2 인권침해 방지 방안 • 공정범위 운영 확대를 위한 기관 전화(ARS) 시스템 구축 필요	3-2 노동조합 부재 조치 • 노동조합의 부재로 이를 위한 대안책 마련 시급

□ 2025년 인권경영 추진과정

구분	내용
1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 수립일자 : 2025. 9. 30. • 주요내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재정비 및 기반 공고화
2 인권의 이해 및 인권경영의 기초 임직원 대상 교육	• 교육일자 : 2025 . 11. 10. • 교육내용 : 직장 내 인권감수성 교육, 직장내 인권 침해 유형, 의사소통훈련 등 • 이수인원 : 24명(전 직원 이수)
3 인권영향평가	• 평가일자 : 2026.2.9. ~ 2.13. • 주요내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재정비 및 기반 공고화
4 인권경영위원회	• 개최일자 : 2026.3.9. ~ 3.13. • 주요내용 :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수렴 및 인권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심의
5 인권경영 보고서 공유	• 공유내용 : 2025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권경영 보고서 • 공유대상 : 공공기관 인권경영 업무협약 기관

□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 2024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100% 이행

구분	내용	추진내용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 인권경영 성과 및 관리를 포함한 환류체계 구축 •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 실시	• 계획수립→추진→평가→개선과제도출 시스템 구축 •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교육 실시(2025.11.10.)
인권침해 방지 방안	• 공정범위 운영 확대를 위한 기관 전화(ARS) 시스템 구축 필요	• 2025년 통화매니저 부서별 1개 시범 도입 후 2026년 전직원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 완료
노동조합 부재 조치	• 노동조합의 부재로 이를 위한 대안책 마련 시급	• 노사협의체 정기운영(반기1회)을 통한 근로자 이슈 전직원 가치 공유 해결

IV 단계별 추진 결과

1단계 인권경영 추진체계 재정비 및 기반 공고화

□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 인권경영시스템 도입과 인권경영 실행동력 강화를 위한 내·외부 선제적 조직체계 마련 및 내규제정, 인권선언, 임직원 교육 등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공고화

□ 인권경영 체계 재정비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인권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외부위원 50%이상)

구분	성함	성별	비고
위원장	이○호	남	당연직
내부위원	김○량	여	당연직
	이○희	여	당연직
외부위원	유○성	남	위촉직
	양○은	여	위촉직
	최○자	여	위촉직

-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로 정책 심의 · 의결의 투명성 · 전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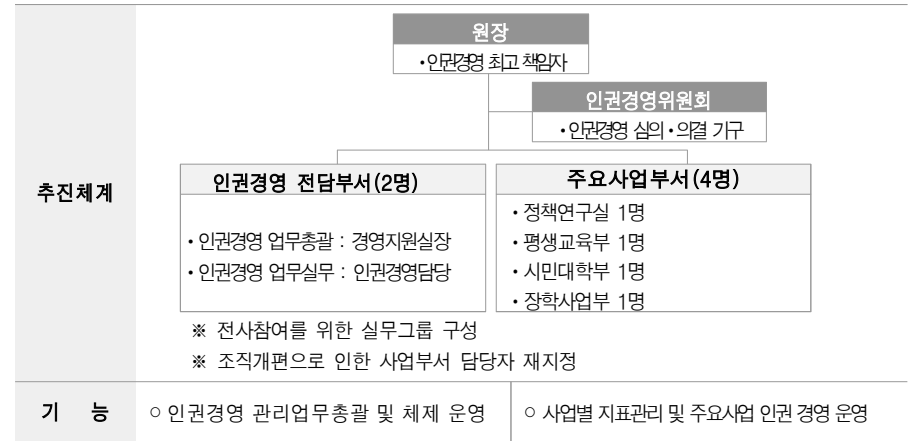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2026년 운영성과

- 정기회의를 통한 2025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 결과 심의 및 개선과제 도출 (25.3.) - 여성임원 확대를 통한 성비균형 달성

○ 내부 추진체계 점검



□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 운영

○ 인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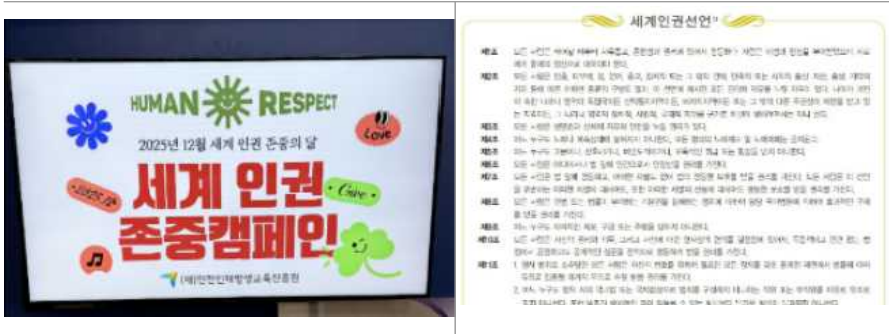
- 임직원 인권교육 의무화로 내부구성원 활동참여 및 관심유도
- 임직원 인권의식 내재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교육 실시

○ 교육방법

인권 교육	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2025. 11.10. · 주제: 직장 내 인권감수성 교육, 직장내 인권 침해 유형, 의사소통훈련 등
	비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 1. ~ 12. (상시) · 주제: 인권 및 인권경영의 이해 등 ·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 활용
공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 1. ~ 12. (상시) · 주제: 청렴, 폭력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아동, 환경, 디지털 등 · 방법: 재단주관/개인주관, 대면/비대면을 활용한 적극적인 교육 추진

□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보호 캠페인 운영**

-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 10.)을 ‘인권존중의 날’ 로 지정하여 재단 인권 존중 캠페인을 운영하여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및 확산
- 임직원 인권경영 합동선언 및 캠페인 실시



□ **인권경영현장 공유**

- 기관 관련 협력사 대상 인권경영 선언문 공유
 - 재단의 인권경영 운영 목적 및 인권경영 의지 공유 및 확산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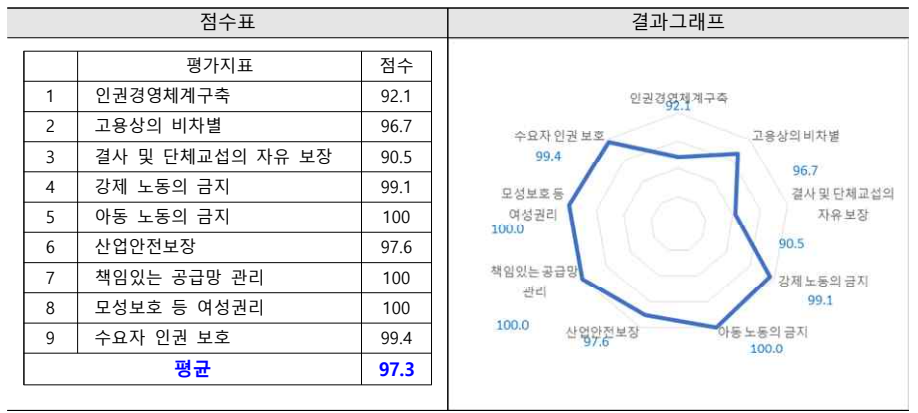
2-1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목적)** 기관운영 전반 및 주요사업의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 인권친화적 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 강화
- **(평가대상)**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기관운영 : 재단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등 포괄적인 범위 평가
 - 주요사업 : 인천시민대학 사업 지표별 인권영향평가
- **(평가기간)** 2025. 01. 16.(화) ~ 01. 23.(화) [7일]

2-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진단 결과**

연번	평가분야	세부지표	답변결과				점수	등급
			예	보합요	아니오	정보음		
1	인권경영체계구축 (5개 영역, 10개 지표)	1. 인권존중 정책선언	15	2	0	1	94.1	1등급
		2. 인권영향 평가 정기실시	32	3	0	1	95.7	1등급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29	6	0	1	88.0	2등급
		4. 인권경영 성과	43	5	0	6	94.8	1등급
		5. 구체절차 마련	27	5	2	2	86.8	2등급
2	고용상의 비차별 (3개 영역, 10개 지표)	1. 고용상 비차별	50	4	0	0	96.3	1등급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1	6	1	0	96.3	1등급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8	0	0	0	100	1등급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2개 영역, 3개 지표)	1.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15	2	0	1	94.1	1등급
		2.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29	6	0	1	88.0	2등급
4	강제 노동의 금지 (1개 영역, 6개 지표)	1. 강제노동 금지	106	2	0	0	99.1	1등급
5	아동 노동의 금지 (1개 영역, 3개 지표)	1. 연소자 고용 금지	54	0	0	0	100	1등급
6	산업안전보장 (3개 영역, 4개 지표)	1. 작업장 안전	18	0	0	0	100	1등급
		2.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2	2	0	4	92.9	1등급
		3.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30	1	0	5	98.4	1등급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개 영역, 3개 지표)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7	0	0	7	100	1등급
8	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3개 영역, 5개 지표)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8	0	0	0	100	1등급
		2. 가족친화 제도 실행	54	0	0	0	100	1등급
		3. 가족친화 경영 만족도	18	0	0	0	100	1등급
9	수요자 인권 보호 (2개 영역, 5개 지표)	1. 수요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7	1	0	0	97.2	1등급
		2. 수요자 사생활 보호	67	0	0	5	100	1등급



□ **총평**

- 총 9개 분야, 49개 지표로 이루어진 2025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종합평균 점수는 97.3점**으로 종합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인권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수요자 인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등 핵심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법적 윤리적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함.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인권경영 수준을 한층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세부 내용**

○ **분야 1. 인권경영체계 구축**

- 분야 설명 : 인권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 구축 정도
- 항목 득점 : 92.1, 1등급

1. 주요성과

- **인권존중 정책 선언** : 기관 홈페이지 인권경영선언문을 게재 하고, 인권경영보고서를 유관기관에 배포 및 공유하여 기관의 인권경영 정책 선언을 내외부로 확산함.
- **인권영향평가 정기 실시** :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기관 활동의 인권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
- **인권경영 성과** : 매년 내부 인권영향평가와 외부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인권경영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대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함.

2. 개선사항

- **구제절차 마련** :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제외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
- **인권경영 제도화 조치** : 인권경영 제도의 고도화 및 정기적 활동 필요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 분야 설명 : 고용과정, 성별, 인사관리 등에 따른 인권침해 정도
- 항목 득점 : 96.7점, 1등급

1. 주요 성과

- **고용상 비차별** : 정규직·기간제 구분없이 블라인드 채용을 유지하여 차별없이 고용
- **고용상 남녀 비차별** :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고용 기회와 임금 체계 유지.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등 포괄적 정책 마련.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분야 설명 : 노동조합 활동보장, 정당한 단체행위의 존중 노력 정도
- 항목 득점 : 90.5점, 1등급

1. 주요성과

-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을 규정에 명시하며, 이외 근로 관련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한 모임 등 다양한 모임 구성 보장

2. 개선사항

-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 노사협의체 등 다양한 대안적 조치 마련이 있지만,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신청 등 정식 단체의 조합 구성 및 행정 절차 진행 필요

○ **분야 4,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분야 설명 : 강제노동 방지 및 연소자 고용 금지 노력 정도
- 항목 득점 : 99.1점, 1등급 / 100점, 1등급

1. 주요성과

- **강제노동 금지** :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 시스템 운영 및 전사적 윤리경영 정착.
- **연소자 고용 금지** : 연소자 고용 금지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며, 관련 리스크가 전무.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 분야 설명 : 노동자의 근무지 안전보장 확보 노력 정도
- 항목 득점 : 97.6점, 1등급

1. 주요 성과

- **사무실 안전** : 점심시간 사무실 보안담당자 설정 및 사무실의 물리적·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 및 예방 활동 지속 강화, 부서별 ARS 시스템 시범도입을 통한 노동자 감정보호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2026년 전직원 도입 예정)
-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 임산부 시간외근로 제한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및 약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을 통해 모성보호 친화 정책 구체화 및 유급육아시간, 육아기 단축근로 개정을 통해 임산부 및 산후 육아 친화정책 기반을 마련

2. 개선사항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사고 매뉴얼 등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지원체계 및 매뉴얼 마련 검토 필요

○ 분야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분야 설명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노력 정도
- 항목 득점 : 100점, 1등급

1.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인권보호를 약속하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공급업자, 하청업자 등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음. •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분야 8. 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 분야 설명 : 일·가정 양립 정책 등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 노력
- 항목 득점 : 100점, 1등급

1.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층 리더십 :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와 규정개정을 통해 2025년 시간선택제 규정 명시 등 모성보호 정책을 효과적 운영. • 가족친화 제도 실행 : 모성보호 관련 규정 개정 및 명시, 해외배우자 동반휴직 및 자기개발 휴직 등 가족친화적 휴가 신설 • 가족친화 경영 만족도 :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반기별 인사운영 만족도 피드백 과정 및 추가적 복지 강화 방안 고려.(2025년 연말 부서별 성과워크숍 시행)

○ 분야 9. 수요자 인권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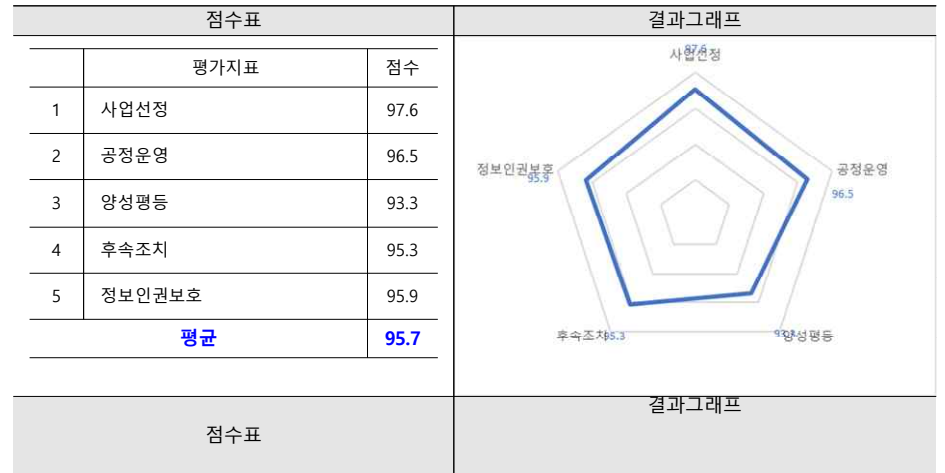
- 분야 설명 : 수요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항목 득점 : 99.4점, 1등급

1.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채용 또는 학습자 모집 등 수요자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함으로써 외부 고객 대상 개인정보를 보호함. •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에 의거 수요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에 대책 마련.

2-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분	평가항목	답변결과			점수	등급
		예	보완필요	아니요		
2025년 대학생 해외봉사	1. 사업선정	16	1	0	97.6	1등급
	2. 공정운영	31	3	0	96.5	1등급
	3. 양성평등	15	3	0	93.3	1등급
	4. 후속조치	15	2	0	95.3	1등급
	5. 정보인권보호	35	1	1	95.9	1등급



□ 총평

- 총 5개 분야, 7개 지표로 이루어진 2025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종합평균 점수는 95.7점으로 종합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나타났음.
- 사업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보접근 및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 사업 참여자 선정은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수요자의 사생활보호, 민원 및 불편 사항 처리, 권리침해 최소화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부 내용

○ 분야 1. 사업선정

- 분야 설명 : 사업선정의 공정성 평가
- 항목 득점 : 97.6점, 1등급

- 사업 계획서, 모집공고, 면접심사 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사업 수혜자 선정을 진행함.
- 2025년 대학생 해외봉사 참여 장학생 선정 시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공고 시 신청자격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 분야 2. 공정운영

- 분야 설명 : 사업 운영의 공정성 및 민원처리 관련 인권침해여부 평가
- 항목 득점 : 96.5점, 1등급

- 대학생 해외봉사 장학생 선발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개최하여 공정성 확보.
- 인권경영 규정 내 제6장 인권침해 구제에 따라 고객 또는 외부이용자에게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진흥원 홈페이지 내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운영하며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인, 거래업체, 장학생 등 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음.
- 아울러 관리자 및 인솔자가 현장에 참여하여 불편사항 및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 분야 3. 양성평등

- 분야 설명 : 사회적 약자 관련 인권침해 여부 평가
- 항목 득점 : 93.3점, 1등급

1. 주요성과

- 2025년 대학생 해외봉사 수혜자의 자격기준 중 사회적 배려대상을 필수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을 운영함.
- 수당 등 인건비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여수당 및 용역 인건비상 남녀 차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함

○ 분야 4. 후속조치

- 분야 설명 : 사업진행 중 수요자 의견수렴 및 사업정보 제공
- 항목 득점 : 95.3점, 1등급

- 대학생 해외봉사 장학생 선발 및 해외 봉사 추진시 만족도 조사 실시, 홈페이지 내 질문과 답변 게시판 운영, 결과보고회를 통한 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용고객 불만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 권리 제한을 개선하고 있음.

○ 분야 5. 정보 인권보호

- 분야 설명 : 고객 알권리, 이용고객 관련 인권침해 여부 평가
- 항목 득점 : 95.9점, 1등급

- 진흥원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내 공지사항, 자료실, 포토갤러리, 보도자료 및 열린 경영 내 경영공시 게시판을 통해 진흥원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2025년 대학생 해외봉사 용역 계약 시 정보보안 각서 및 서약서 제출

2-4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개요

- (개최일시) 2026. 3. 9. ~ 3. 13. / 서면심의
- (참석대상) 인권경영위원 6명(외부 3명, 내부 3명)
- (의결안건) 2025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심의

□ 종합의견

-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전반에서 인권경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평균 97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특히 고용상의 비차별, 산업안전, 공급망 인권관리, 수요자 인권보호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적 기반과 운영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년도 대비 평가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표에서 양호한 결과가 확인되었음. 다만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조치, 구제절차 마련,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등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조직 내 노동자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노사협의체 등 공식적인 참여 구조를 통해 노동 관련 인권 보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 점수 산식, 결과 분석체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평가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부평가의견

인권경영체계구축	- 인권경영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다만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조치 및 구제절차 마련 등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고용상의 비차별	- 블라인드 채용 유지 및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채용 및 근로환경 전반에서 차별 방지 기준과 운영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노동조합 부재 상황을 고려한 대안적 의견수렴 구조 마련과 조직 내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노동조합부재시 대안적 조치(88점)의 개선사항(정식 단체의 조합 구성 및 행정 절차 진행 필요)이 제시된 것이 내년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강제 노동의 금지	-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상 명시함.
아동 노동의 금지	- 아동노동 금지를 규정상 명시함.
산업안전보장	-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가족친화 제도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업체 대상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징구 등 공급망 인권 보호 관리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 가족친화 제도와 모성보호 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수요자 인권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체계가 운영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2025 대학생 해외봉사	- 참여자 모집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인권친화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3단계 인권경영 실행, 공개

3-1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개선에 반영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도출

□ 개선과제

2026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종합		
구분	개선과제	비고
1	노동자 의견수렴 및 노사소통체계 강화	
2	인권경영제도 운영 및 성과모니터링 체계 강화	
3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체계 개선	

3-2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 재단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외부 공개

○ 재단 인권보호 노력 및 성과를 알리는 최종보고서 공개
- 2026년 인권경영 보고서 공유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4-1 구제절차의 고도화(인권침해 구제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침해 구제 기구

- 인권경영 전담부서 지정
 - 인권경영 업무총괄(인권경영책임관) : 경영지원실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지원실 인권경영담당
-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 조직 구성
 - 위원장(원장), 내부위원2인, 외부위원3인

□ 인권침해 상담(신고) 센터 : 클린신고센터

○ 외부신고시스템(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구분	주요내용
설치장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내 열린경영 클린신고센터
주관부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영지원실
처리절차	인권경영책임관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메일, 우편, 전화, Fax 등으로 신고
기타사항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 가능)



□ 구제절차 흐름도

단계	내용	주체
신고	· 인권침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부서에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 발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내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내부직원, 외부 이해관계자 등
↓		
신고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신고서 접수 후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 - 인권침해사항 인권침해 접수대장에 기재 ·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여부 상담 -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을 경우 등 각하	인권경영 담당부서
↓		
보고	· 원장에게 사고사실 보고	인권경영 책임관
↓		
당사자 합의	→ YES · 사건종결	인권경영 책임관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집	·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소집	인권경영 담당부서
↓		
조사	· 당사자 서면, 출석 요구 등으로 조사를 수행 -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신고 불이익 방지 ·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심의의결 및 통보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하여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접수 및 처리대장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시정 및 조치	·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교육 등	인권경영 담당부서

□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임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관련)
- 재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인권침해 시 조치사항**

○ **담당부서 조치사항**

조치사항	내용
전문적 상담 권유 및 사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 - 행위자에게 비난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나 가해자로 낙인찍는 태도 금물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 행위자의 행동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조력 - 피해자에 대한 소문유포, 비난, 위협, 자체적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요청, 연락 등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동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고지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사항 주시
철저한 비밀유지	- 상담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 **피해자 조치사항**

조치사항	내용
인권침해 자료정리	- 메시지, 이메일, 녹취, 증인확보 등
공식절차 진행	- 상담 자체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런 소통과정이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상담 요청

○ **행위자 조치사항**

조치사항	내용
즉시 진심어린 사과	-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	-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
성실한 조사 협조 및 합당한 징계 결정 시 수용	- 징계 결정 시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
사건 은폐·왜곡 등 2차 가해 시도 중단	-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추가 징계대상)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사항						
피해 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자						
침해내용						
20 신고자 (서명)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인권침해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위원장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회(정기, 임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하
다.

다 음

건 명	
결정내용	

년 월 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

년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위 심의·결정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서명 날인함.

구 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